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3. 10.

광명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2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16일(목)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우 14234)

■ 전화번호 : 02)2680-2525, 팩스번호 : 02)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2680-2525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84
----------	-----

발의연월일 : 2017년 3월 8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 고순희

1. 제정이유

- 광명시의 경우는 수의계약 등 입찰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 및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된 경우 증·감된 예산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예산집행실명제를 통해서 업무담당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또한 주민들의 감시통제기능이 있음)
- 광명시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해서 광명시민 및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예산집행실명제 순으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표대상 사업 규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등(안 제2조)
- 나. 실명의 범위 규정 : 담당공무원과 팀장, 과장, 국장(최종결재자) 및 대상업체,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안 제3조)
- 다. 공표할 내용 규정 :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업무관련자와 대상업체 등(안 제4조)
- 라. 공표방법 규정 :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하며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시 및 공공기관 발주부서의 장(안 제5조)
- 마. 공표시기 규정 : 예산집행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안 제6조)

바. 공표기간 규정 :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자료

가. 관계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①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광명시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계약금액 건당 3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4.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제3조(실명범위 등) 시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부서 및 담당자(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제4조(공표 내용) ① 예산집행 실명제에 따른 공표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제3조 해당자의 실명으로 한다.

② 공개는 [별표1] 및 [별표2]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표방법)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한다.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공표한다.

- 제6조(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증·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기간)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소 관	회 계 과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

[별표 1]

연번	구분	관서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설계변경일	증·감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부서 및 담당 등	증·감내역 및 기타

<기재요령>

- 1. 관서명란은 제2조의 대상기관명을 표시
- 2. 계약상대자란은 제3조 제2호의 대상업체를 표시
- 3. 부서 및 담당 등란은 제3조 제1호의 공무원 등을 표시

[별표 2]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천원
예산집행 공무원	○ 주무관 : ○ 팀 장 : ○ 과 장 : ○ 국 장 및 최종결재자 :
보조기관	○ 보조기관명 : ○ 대 표 자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85
----------	-----

발의연월일 : 2017년 3월 9일

발 의 의 원 : 김 익 찬 의원

찬 성 의 원 : 고순화·이길숙·안성환

1. 제정이유

-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해 지역서점을 되살리고 독서문화조성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서점(문구점 경영 포함) 수는 2005년 3429곳에서 2015년 2116곳으로 38.3%가 감소했으며, 이 중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작은 서점임. 반면 대형 서점은 같은 기간 7.6%에서 13.4%로 증가
- 동네서점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관심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서점과 인터넷서점들에 밀려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네서점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아니며 책을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동네서점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임
- 이런 환경에서 광명시가 광명시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의 진흥과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안 제5조)
- 지역서점 지원(안 제6조)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안 제7조)
- 구성(안 제8조)

3. 예산수반사항 : 없음

4.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및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명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사업소장
2. 고용경제국장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 대표도서관장
5.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8.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하안도서관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